세인관세법인 SEIN Newsletter

문의사항
양다윤관세사 T/ 02-6011-3056 메일/ dyyang@esein.co.kr

세인 소식지
www.seincustoms.com

2018.01.04.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안내

1. 개요

자가판정 제도개선, 전략기술 이전 및 암호화 품목 관련 허가면제 특례 등 관련 사항 정비 및 최근 국제체제의 통제기준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여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가 다음과 같이 공고되었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주요사항

① 자가판정 제도개선

현재	개정안
▶ 자가판정을 하고자 하는 자가 별지서식에 따라 별표(이중용도 품목, 상황허가대상품목, 군용물자품목)에서 규정하는 물품 등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 ▶ 판정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자가판정인에 대한 교육 등 지도를 실시할 수 있음	▶ 자가판정 하고자 하는 자는 판정기관의 자가판정 관련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별표에 따른 이중용도 품목인 경우 전략물자수출입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판정을 실시 ▶ 자가판정 실시한자는 판정대상 물품의 성능과 용도 등에 대해 전략물자수출입관리시스템에 등록 (원자력 전용품목은 원자력수출입통제종합관리시스템에 등록) ▶ 판정기관의 장은 별지 서식에 따라 자가판정서 발급하며, 필요 시 교육이수를 취소할 수 있음 ▶ 자가판정 유효 기간은 2년으로 설정

문의사항
양다윤관세사 T/ 02-6011-3056 메일/ dyyang@esein.co.kr

세인 소식지
www.seincustoms.com

2018.01.04.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안내

2. 주요사항

② 수출허가시 면제특례확대

(1) 포괄수출허가시 서류면제 특례 확대

현재	개정안
목적지 국가가 별표6의"가"지역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자포괄수출허가 신청서류 면제	목적지 국가가 별표6의 "가"지역에 해당하거나, 최종 수하인이 수출자의 최대주주, 수출자의 해외본점인 경우 등에 해당 시 사용자포괄수출허가 신청서류 면제

(2) 개별수출허가 면제사항 확대

현재	개정안
암호화 품목(통제번호:5A002.a.1, 5B002, 5D002)을 민간기업의 내부시스템 용으로 수출하는 경우로서 최종목적지 국가가 바세나르 체제 가입국인 경우	암호화 품목(통제번호:5A002a.1~5A002a.4, 5B002,5D002)을 민간기업의 내부시스템으로 수출하는 경우로서 최종목적지 국가가 바세나르 체제 가입국인 경우 또는 통제체제를 잘 갖춘 35개 국가에 본사를 둔 최종사용자에게 내부시스템용으로 수출하는 경우

문의사항
양다윤관세사 T/ 02-6011-3056 메일/ dyyang@esein.co.kr

세인 소식지
www.seincustoms.com

2018.01.04.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안내

2. 주요사항

③ 국제수출통제체제 개정사항 반영 및 운영상 미비점 개선

1) 원자력공급국 통제품목 등 최근 체제 별 주요 개정사항 반영
2) CP 갱신절차 마련 및 등급심사 기준 개선
3) '사전 판정'을 '전문판정'으로 명칭변경, 별지 서식 간소화 및 통폐합

④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018년 1월 12일까지 하기 사항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

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2)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0118)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안보과
  > 전화: 044-203-4058
  > 팩스: 044-203-4708

[별지 제5호 서식]
Annexed paper No. 4-3

자가판정서
Self-classification Form

<table>
<tr><td rowspan="3">① 판정인
Company</td><td>상 호
Name of Company</td><td></td><td>대표자성명
Name of Representative</td><td></td></tr>
<tr><td>주 소
Address</td><td></td><td>전 화
Telephone</td><td></td></tr>
<tr><td>사업자등록번호
Business Registration No.</td><td></td><td>무역업고유번호
(Trade Business Code)</td><td></td></tr>
<tr><td colspan="2">② HS번호
HS Code</td><td colspan="3">④ 형식 및 규격
Type and Specifications</td></tr>
<tr><td colspan="2" rowspan="2">③물품명(기술명 및 기술내용)
Item</td><td colspan="2">모델번호 및 모델명(동 기술에 의한 생산제품)
Model Number & Name (Items developed or produced from the technology)</td><td>규격/용도
Specifications and Usage</td></tr>
<tr><td colspan="2"></td><td></td></tr>
<tr><td colspan="2" rowspan="2">⑤ 판정결과
Classification results</td><td colspan="2">전략물자 해당여부 Controlled(Control Classification No.) / Uncontrolled</td><td>• 해당(Yes) □ 비해당(No) □</td></tr>
<tr><td colspan="3">• 통제번호 Control Classification No. :</td></tr>
<tr><td colspan="2">⑥ 자가판정 등록번호
Self-classification Registration No.</td><td></td><td>⑦ 유효기간
Validity of Classification</td><td></td></tr>
</table>

「전략물자 수출입고시」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의 책임 하에 ⑤과 같이 전략물자 해당여부를 확인합니다.

I hereby confirm and take full responsibility of the result of self-classification as stated in ⑤ above as stipulated in Article 13 of Public Notice on Trade of Strategic Items.

20 . . .

대표자 (서명 또는 인)

Representative of the Company (Signature)

* **주의사항 : ⑤ 판정결과가 "해당"인 물품을 수출할 경우 반드시 관계기관으로부터 수출허가를 받아야 하며, 무허가 수출시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별지 제6호 서식]
Annexed paper No. 6

포괄수출허가(신청)서 Comprehensive Export License (Application)

처리기간 : 15일 Handling Time : 15 days

① 신청인(상호, 주소, 성명, 전화번호) Applicant (Company Name, Address, Representative,Telephone)	사업자등록번호 Business Registration No. 무역업고유번호 (Trade Business Code)	

② 포괄수출허가 대상물품 / 수출 예상 품목 명세 Item Description			
③ HS 번호 HS Code	④ 통제번호 Control Classification No.	⑤ 품명 및 규격 Item/Specifications	⑥ 비고 Additional Information

⑦ 구매자 또는 최종수하인 Purchaser or Ultimate Consignee (Company Name)	주 소 Address
⑧ 최종사용자 End User (Company Name)	주 소 Address
⑨ 최종용도 또는 사업 (프로젝트)명 End-use or Project Name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제 29조/제 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자/품목〕 포괄수출허가를 신청합니다.

I hereby apply for Comprehensive Export License in accordance with Article 29 / 35 of the 「Public Notice on Trade of Strategic Items」.

20 . . .

신청인 Applicant 서명 또는 인 Signature

⑩ 유효기간 Validity of License	⑪ 허가번호 License No.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제30조/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자/품목〕포괄수출을 허가합니다.

I hereby approve the above Comprehensive Export License in accordance with Article 30 / 36 of the 「Public Notice on Trade of Strategic Items」.

20 . . .

장 관 인

Minister of Official Stamp

※ 주의: ⑩~⑪ 은 관계 행정기관에서 입력할 내용임

※ Attention : ⑩~⑪ should be filled in by the head of the relevant administrative agency

* 품목 포괄수출허가의 경우 ③ - ⑥항은 기입 불필요, 사용자 포괄수출허가는 ⑧- ⑨항 기입 불필요

* In case of item-based comprehensive license, please skip ③ to ⑧. In case of User-based comprehensive license, please skip ⑧. to ⑨

[별표 6]

전략물자 수출지역 구분

제1조 전략물자 수출지역은 아래 표와 같이 "가"지역과 "나"지역으로 구분한다.

"가"지역	아르헨티나, 호주, 오스트리아, 불가리아, 벨기에, 캐나다, 체코,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일랜드, 이탈리아, 일본,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우크라이나, 폴란드, 포르투갈,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터키, 영국, 미국(29개국) * 상기 국가들은 바세나르체제(Wassenaar Arrangement : WA), 핵공급국그룹(Nuclear Suppliers Group : NSG), 오스트레일리아그룹(Australia Group : AG) 및 미사일기술통제체제(Missile Technology Control Regime : MTCR) 등 4개 국제수출통제체제에 모두 가입한 국가
"나"지역	북한(제3국을 경유하여 재수출되는 경우에 한함), 나우루, 네팔, 말레이시아, 몰디브, 몽골, 바누아투, 방글라데시, 베트남, 스리랑카, 싱가포르, 아프가니스탄, 인도네시아, 인도, 중국, 대만, 마카오, 홍콩, 태국, 파키스탄, 파푸아뉴기니, 라오스, 캄보디아, 브루나이, 필리핀, 동티모르, 마샬군도, 미얀마, 미크로네시아, 부탄, 서사모아, 솔로몬, 키리바시, 통가, 투발루, 휘지, 팔라우, 가이아나, 그레나다, 니카라과, 도미니카(연), 멕시코, 바베이도스, 바하마, 베네수엘라, 벨리즈, 세인트루시아, 세인트 빈센트, 세인트 키츠 네비스, 안티구아바브다, 자메이카, 칠레, 콜롬비아, 트리니다드 토바고, 페루, 수리남, 브라질, 과테말라, 도미니카(공), 볼리비아, 아이티,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우루과이, 코스타리카, 파나마, 파라과이, 쿠바, 라트비아, 러시아, 루마니아, 리투아니아, 몰도바, 몰타, 벨로루시,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아르메니아, 아이슬란드, 아제르바이잔, 알바니아, 우즈베키스탄, 세르비아-몬테네그로, 카자흐스탄, 크로아티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그루지야, 사이프러스, 보스니아, 리히텐슈타인, 교황청, 에스토니아, 안도라, 산마리노, 마케도니아, 모나코, 레바논, 수단, 예멘, 오만, 요르단, 이란, 카타르, 이집트, 쿠웨이트, 바레인,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이라크, 이스라엘, 시리아, 가나, 가봉, 감비아, 기네, 기네비소, 나미비아, 나이지리아, 니제르, 라이베리아, 지부티, 르완다, 리비아, 마다가 스칼, 말라위, 말리, 모로코, 모리셔스, 모리타니와, 베냉, 보츠와나, 부룬디, 부르키나파소, 상투메프린시페, 세네갈, 소말리아, 시에라리온, 알제리, 앙골라, 에리트레아, 우간다, 에티오피아, 콩고민주(구자이리), 잠비아, 적도기니,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차드, 카메룬, 케냐, 코모로, 코트디부아르, 콩고, 토고, 탄자니아, 튀니지, 카보베르데, 모잠비크, 짐바브웨, 세이셸, 남아공, 레소토, 스와질란드 등 "가"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국가 및 지역

제2조 수출지역의 구분은 최종목적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최종목적지가 "가"지역이라 하더라도 "나"지역을 경유하는 경우에는 "나"지역으로 전략물자를 수출하는 것으로 간주한다.